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(주)매일신문사-대구대학교 상호교류협약서

(주)매일신문사와 대구대학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·협력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협력분야】

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.

1.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와 개설
2. 생활체육시설의 상호 개방
3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3조 【상호협약】

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 【협약의 해지】

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,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5조 【유효기간】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.

제6조 【협약서 보관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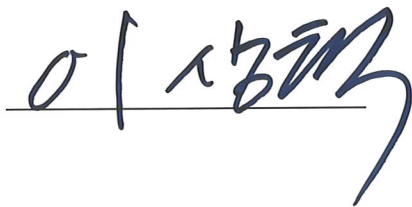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2월 16일

 **每日新聞**

(주)매일신문사 사장

이 상 택

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대구대학교 총장

김 상 호

